

#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3.05.26 (금)

3. 변경 사유 :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2022.05.02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2.03.31 기준	<a href="#">2023.03.31 기준</a>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2022.05.01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운용전문인력	2023.02.01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2022.05.02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2.03.31 기준	<a href="#">2023.03.31 기준</a>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2022.05.01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운용전문인력	2023.02.01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a href="#">연혁추가</a>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3.02.01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2.96%으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a href="#">19.68%</a> 으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23.02.01 기준	<a href="#">2023.05.01 기준</a>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17기(2022.05.01) 기준	<a href="#">제 18기(2023.05.01) 기준</a>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a href="#">&lt;신설 1&gt;</a>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21.12.31 기준	<a href="#">2022.12.31 기준</a>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3.06 기준	<a href="#">2023.05.04 기준</a>

<신설 1>

(주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72.7)%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8기 0백만원, 17기 0백만원, 16기 0백만원 발생)

(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8기 0백만원, 17기 0백만원, 16기 0백만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30,880.15	132.07	0.10	224,583.03	225.73	0.1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130,880.15	132.07	0.10	224,583.03	225.73	0.1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참고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577,451	64,706.06	2,529,187	66,469.98	22,087.48	300.94	0.00

(주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  
 (분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공모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매입방법/환매방법: 제X영업일	- <u>매입방법/환매방법: X영업일</u>
제32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 3. &lt;생략&gt;</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 3. &lt;현행과 동일&gt;</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u>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계감사 적용 면제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p>①~②&lt;생략&gt;</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p>	<p>①~②&lt;현행과 동일&gt;</p> <p>③ <u>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u></p>
제40조(판매수수료)	<p>①~②&lt;생략&gt;</p> <p>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p>	<p>①~②&lt;현행과 동일&gt;</p> <p>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p>

	<p>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u>수익증권저축약관</u>"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제 45 조(투자신탁의 해지)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중간생략) ~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lt;생략&gt;</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 ④ &lt;생략&gt;</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중간생략) ~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2. &lt;현행과 동일&gt;</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 ~ ④ &lt;현행과 동일&gt;</p>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 &lt;생략&gt;</p> <p>② 집합투자업자는 ~ (중간생략) ~ 지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lt;생략&gt;</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3. ~ 5. &lt;생략&gt;</p> <p>③ ~ ⑨ &lt;생략&gt;</p>	<p>① &lt;현행과 동일&gt;</p> <p>② 집합투자업자는 ~ (중간생략) ~ 지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lt;현행과 동일&gt;</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p>3. ~ 5. &lt;현행과 동일&gt;</p> <p>③ ~ ⑨ &lt;현행과 동일&gt;</p>
제 51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p>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u>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u>(<u>연금저축 종류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u>)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